##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1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서삼석・박희승・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복기왕

이병진 • 박수현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 문대림

정진욱 • 김영진 • 김문수

안도걸 · 강선우 · 조계원

이워택 • 신영대 • 이개호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3신설).

####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감면"을 각각 "감면과 금리 인하"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① 국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물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할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농작물
- 2. 산림작물
- 3. 수산양식물
- 4. 벼(이식이나 파종을 못하거나 이식이나 파종 후 정상적인 생육을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 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 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주민에게 평년 소득 및 생산량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생 략)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2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	9
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	
원하는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	
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u>감면</u>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3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	3

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 원하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이자의 <u>감면</u>

라. (생 략)

4. (생략)

④ ~ ⑧ (생 략)

<신 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① 국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또는 어가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생산물의 생산량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으로 감소할 경우 피해보상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u>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1. 농작물
2. 산림작물

3. 수산양식물

4. 벼(이식이나 파종을 못하거

나 이식이나 파종 후 정상적

<u>인 생육을 못한 경우도 포함</u> <u>한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주민에게 평년 소득 및 생산량 등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